

## 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

-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권고지침 마련 (중수본 방역총괄팀)

### 【기본원칙】

- 집단감염 발생 장소 중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
- 처분권자(지자체)의 처분재량권을 존중하고, 지자체별 처분편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처분 대상 중심으로 기준 제시

#### ① 과태료 처분 및 고발(벌금)

- \* (과태료) 영업자 300만원 이하, 개인 10만원 이하 (벌금) 300만원 이하
- (과태료) 1차 위반시 경고·계도,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원칙
  - 다만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,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, ③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적극적 과태료 처분 실시
- (벌금집합금지 영업금지 위반) 감염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적극적 고발조치

### 【핵심 방역 수칙】

- (사업주) ①이용인원 준수, ②영업시간 준수,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, ④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
- (이용자) ①마스크 착용

※ 시설종류별 핵심방역 수칙 별도 추가(무관용 원칙 등 적용 권고지침 참고)

#### ②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조치

- (집합금지) 아래 사항으로 감염우려가 높은 경우 적극적 집합금지 처분 실시
  -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, ②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, ③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
- (영업정지)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(3.26~4.16 입법예고 중) 후 적용
  - \* (현행) 경고 →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
  - (개선) 운영중단 10일 → 20일 → 3개월 → 시설폐쇄